

가금류의 수입추천요령

'84년도 하반기 및 '85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총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수입추천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년 6월 일
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

다 음

1.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기준

CCCN	품 목 명	추천대 상품목	추 천 기 준
0105	0202 가금류(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 및 기니아새) 1마리의 중량185g 초과 의 종계 이외의 닭	좌 동 좌 동	가. 국내수급조절상 농수산부장관이 인 정하는 수량에 한함. 나. 대한 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용계 경제능력검정을 필하여 능력의 우수 성을 인정받아야 함. 다만, 실용계 경제능력 검정용 닭의 수입은 품종 당 200수 범위 내에서 능력검정성적 없이 추천할 수 있다.

2. 수입제한

국내외 경기동향, 국제수지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요령상의 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수 있다.

3. 추천대상자

가. 양계를 경영하고 있는 실수요자

4. 처리기간 : 2 일

5. 구비서류

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 2부.

나. 물품매도 계약서 1부.

다. 가축(닭) 자가사육증명서(읍, 면, 동장 발행) 1부.

부 칙

1. 이 요령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